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 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 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의약품 등의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